

#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가능

2024.06.10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



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
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육아휴직급여 특례

### ▲ 지원대상

ㆍ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 포함)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

#### ▲ 지원내용

- ·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급
- ·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
- ㆍ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,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

대상	두 번째 육아휴직자
기간	최대 1년(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)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
지원금	첫 3개월 통상임금 100% 지급(상한액 250만 원)
	<b>이후 기간</b> 통상임금 50% 지급(상한액 120만 원)

## ▲ 신청방법

- · 온라인 신청 : 고용24
- ㆍ방문 신청 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- ※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
## ▲ 문의

·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1350)